

구미시공설승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12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현재 우리시 공설승조당 사용료가 전국 수준에 비해 낮게 적용하고 있어 추가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가 없어
- 향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승조당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사용료 조정
 - 관내주민 이용자
 - 일반실, 외국인실 사용료 : 60,000원 → 80,000원
 - 무연고실 : 30,000원 → 40,000원
 - 관외주민 이용자
 - 일반실, 외국인실 사용료 : 120,000원 → 220,000원
 - 무연고실 : 60,000원 → 110,000원

3. 참고사항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공설승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공설승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공설승조당설치및사용조례” 를 “구미시공설승조당 설치 및 사용 조례” 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】

송조당 사용료

(단위:원)

구분 실별	구미시민			타지역			비 고
	계	사용료	관리비	계	사용료	관리비	
일 반 실	120,000	80,000	40,000	300,000	220,000	80,000	
무연고실	60,000	40,000	20,000	150,000	110,000	40,000	
외국인실	120,000	80,000	40,000	300,000	220,000	80,000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미시공설송조당설치및사용조례 【별표】 사용료 (단위:원)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 설별</th><th colspan="3">구미시민</th><th colspan="3">타지역</th><th rowspan="2">비고</th></tr><tr><th>계</th><th>사용료</th><th>관리비</th><th>계</th><th>사용료</th><th>관리비</th></tr><tr><td>일반설</td><td>100,000</td><td>60,000</td><td>40,000</td><td>200,000</td><td>120,000</td><td>80,000</td><td rowspan="3">타지역 100% 가산</td></tr><tr><td>무연고설</td><td>50,000</td><td>30,000</td><td>20,000</td><td>100,000</td><td>60,000</td><td>40,000</td></tr><tr><td>외국인설</td><td>100,000</td><td>60,000</td><td>40,000</td><td>200,000</td><td>120,000</td><td>80,000</td></tr></table>	구분 설별	구미시민			타지역			비고	계	사용료	관리비	계	사용료	관리비	일반설	100,000	60,000	40,000	200,000	120,000	80,000	타지역 100% 가산	무연고설	50,000	30,000	20,000	100,000	60,000	40,000	외국인설	100,000	60,000	40,000	200,000	120,000	80,000	구미시공설송조당 설치 및 사용 조례 【별표】 송조당 사용료 (단위:원)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 설별</th><th colspan="3">구미시민</th><th colspan="3">타지역</th><th rowspan="2">비고</th></tr><tr><th>계</th><th>사용료</th><th>관리비</th><th>계</th><th>사용료</th><th>관리비</th></tr><tr><td>일반설</td><td>120,000</td><td>80,000</td><td>40,000</td><td>300,000</td><td>220,000</td><td>80,000</td><td rowspan="3">삭제</td></tr><tr><td>무연고설</td><td>60,000</td><td>40,000</td><td>20,000</td><td>150,000</td><td>110,000</td><td>40,000</td></tr><tr><td>외국인설</td><td>120,000</td><td>80,000</td><td>40,000</td><td>300,000</td><td>220,000</td><td>80,000</td></tr></table>	구분 설별	구미시민			타지역			비고	계	사용료	관리비	계	사용료	관리비	일반설	120,000	80,000	40,000	300,000	220,000	80,000	삭제	무연고설	60,000	40,000	20,000	150,000	110,000	40,000	외국인설	120,000	80,000	40,000	300,000	220,000	80,000	[제명] 제명 뛰어쓰기 적용 사용료 인상
구분 설별		구미시민			타지역		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	사용료	관리비	계	사용료	관리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설	100,000	60,000	40,000	200,000	120,000	80,000	타지역 100% 가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무연고설	50,000	30,000	20,000	100,000	60,000	4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외국인설	100,000	60,000	40,000	200,000	120,000	8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 설별	구미시민			타지역	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	사용료	관리비	계	사용료	관리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설	120,000	80,000	40,000	300,000	220,000	80,000	삭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무연고설	60,000	40,000	20,000	150,000	110,000	4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외국인설	120,000	80,000	40,000	300,000	220,000	8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참고자료

○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제23조 (공설묘지 등의 사용료·관리비의 부과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·공설 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,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, 시설물설치·조성비용,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.

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·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,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